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6일,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0.) 상정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도읍의원)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획득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함. 다만,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피한정후견인이 직원으로서 전자문서보관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원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주요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수진)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결격사유를 유지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만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제정안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례를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개정규정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신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u> <u>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1조의3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u> <u>가. 피성년후견인</u>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 설></u>	<u>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u> <u><삭 제></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u>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36조(결격사유) ----- ----- -----. <u>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